

「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」(교육부예규 제88호) [별표 2]

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교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

1. 실업(전문)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(환산율 7~10할 이내)

(구 「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」)

1) 상향 인정 원칙

- 가.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상향 인정(재획정)하는 경우에는 그 상통여부 (동일분야) 및 인정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되, 상통여부 판단은 「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」(인사 혁신처 예규 제192호, '25.1.23.)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「호봉경력 평가 심의회」를 걸쳐 결정한다.
- 나. 이 항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경력의 상향 인정은 근무경력과 동일한 분야 담당과목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이 항목에서 명시한 대상경력 외의 산업체 근무 경력은 경력 상향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다. 과목 변경, 전직, 전과, 승진 등으로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경력환산율표 「공무원보수규정」(별표22)를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한다.
※ 다만,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은 교원이 승진하여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(중학교, 일반고 등으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)
- 라.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.

2) 세부 적용 기준

합산대상교원	인정대상기관(환산율)	인정대상경력
가.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서 실업(전문)계 교과 및 기술·가정, 기술, 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, 준교사, 실기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, 연구 기관(10할 이내)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합자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또는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 으로,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근무한 경력 <p>※ 이 항목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을 상향 인정받은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향된 경력을 인정한다. (중학교, 일반고 등으로 발령 받은 경우에는 상향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)</p>